

주요국 FTA 체결 현황 및 신규 발효 FTA 분석

2023.12.



2023년 12월 22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302.00원, 100 JPY(엔) = 915.45원, 1 ILS(NIS, 세켈) = 361.02원

[목 차]

I.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4
1. FTA 체결 및 추진현황	4
2. FTA 체결국 농식품 교역규모	7
II. 신규 발효 FTA 및 협정 내용	10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
2. 한-이스라엘 FTA	29
3. 한-캄보디아 FTA	37
4. 한-인도네시아 CEPA	47
III. 시사점	56
1. FTA 활용 및 수출 증대 방안	56

주요국 FTA 체결 현황 및 신규 발효 FTA 분석

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2023년 11월 기준)

-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전 세계 59개국과 FTA 체결
 - * (서명 및 타결) 필리핀·UAE·에콰도르와의 FTA 서명 및 타결
 - * (협상) GCC·우즈벡·과테말라 등과 FTA 협상 진행 중
 - * (협상 개시·여건 조성) 몽골·조지아·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위한 여건 마련
- 2022년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약 98억 9,397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증가

2. 신규 발효 FTA 및 협정내용

- (RCEP) 2022년 2월 국내에서 공식 발효, 아세안 10개국 및 동아시아 3개국, 호주 및 뉴질랜드 총 15개국 참여
 - * (중국) 대부분의 농산물 품목이 한-중 FTA를 통해 양허된 상태로, RCEP을 통한 추가 철폐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의 RCEP 관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 (일본) RCEP을 통해 최초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양조식초, 소주, 곡물발효주, 맥주 등 주요 수출품목 수출 시 RCEP 활용 가능
 - * (베트남) 신선농산물, 기타 음료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
- (한-이스라엘 FTA) 2022년 12월 1일 공식 발효
 - * 2022년 전년 대비 22.6% 증가한 4,206만 달러(한화 약 547억 원) 수출
 - * 커피 농축물, 라면 등 수출품목 대부분에 FTA 관세 혜택 발생
- (한-캄보디아 FTA) 2022년 12월 1일 공식 발효
 - * 2022년 전년 대비 7.3% 증가한 1억 1,336만 달러(한화 약 1,475억 원) 수출
 - * 기타 음료, 조제분유 등 주요 품목 대부분 즉시 또는 15년 내 관세 철폐
- (한-인도네시아 CEPA) 2023년 1월 1일 공식 발효
 - * 2022년 전년 대비 11.5% 증가한 3억 1,831만 달러(한화 약 4,144억 원) 수출
 - * 커피크리머, 기타 음료, 라면 등 수출상위 품목 대부분 3년 이내 관세 철폐

I.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1. FTA 체결 및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기타 새로운 국가와 신규 FTA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 및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 (발효) 2023년 11월 기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함

〈표 II-1〉 FTA 발효 현황(2023년 11월 기준)

발효국	개시일	타결일	서명일	비준일	발효일	의의	
1	칠레	1999.12	2002.10	2003.02	2004.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2	싱가포르	2004.01	2004.11	2005.08	2005.12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3	EFTA ¹⁾	2005.01	2005.07	2005.12	2006.06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4	ASEAN ²⁾	2005.02	2006.04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4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06	2007.11 (서비스 무역협정)	2009.05	2009.05 (서비스 무역협정)	
			2007.11	2009.06 (투자협정)	-	2009.09 (투자협정)	
5	인도	2006.03	2008.09	2009.08	2009.11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6	EU ³⁾	2007.05	2009.07	2010.10.06.	2011.05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7	페루	2009.03	2010.08	2011.03.21.	2011.06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8	미국	2006.06	2007.04	2007.06	2011.11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0.12	2018.09.24. (개정협상)	2018.12	2019.01.01. (개정 의정서)	

발효국	개시일	타결일	서명일	비준일	발효일	의의	
8	미국	2006.06	2007.04	2007.06	2011.11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0.12	2018.09.24. (개정협상)	2018.12	2019.01.01. (개정의정서)	
9	튀르키예	2010.04	2012.03	2012.08.01.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2012.11	2013.05.01.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4.07	2015.02.26. (서비스 투자협정)	2015.11	2018.08.01. (서비스 투자협정)	
10	호주	2009.05	2013.12	2014.04.08.	2014.12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1	캐나다	2005.07	2014.03	2014.09.22.	2014.1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12	중국	2012.05	2014.11	2015.06.01.	2015.11	2015.12.20.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 (* 22년 기준)
13	뉴질랜드	2009.06	2014.11	2015.03.23.	2015.11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4	베트남	2012.08	2014.12	2015.05.05.	2015.11	2015.12.20.	한국의 4위 투자대상국(* 22년 기준)
15	콜롬비아	2009.12	2012.06	2013.02.21.	2014.04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16	중미 5개국 ⁴⁾	2015.06	2016.11	2018.02.21.	2019.08	2021.03.01. 전체 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17	영국	2017.02	2019.06	2019.08.22.	2019.10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18	RCEP ⁵⁾	2012.11	2019.11	2020.11.15	2021.12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19	이스라엘	2016.05	2019.08	2021.05.12.	2022.09	20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20	캄보디아	2020.07	2021.02	2021.05.12	2022.09	20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21	인도네시아	2012.03	2019.10	2020.12.18	2021.06	2023.01.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출처: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서명 및 타결) 2023년 11월 기준 필리핀, UAE, 에콰도르
와의 FTA 서명 및 타결이 진행됨

〈표 II -2〉 FTA 서명 및 타결 현황(2023년 11월 기준)

서명 및 타결국	추진현황	서명 및 타결일	의의
1 필리핀	(2019.06) 협상개시 (2019.06~2020.0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1.10.26.) 협상타결 선언	(정식 서명) 2023.9.7.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2 UAE	(2023.9) 제1차 공식협상 (2023.10) 제2차 공식협상	(협상타결 선언) 2023.10.14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3 에콰도르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재개 선언 (2022.07~2023.04) 6차~9차 협상 개최	(타결 선언 및 가서명) 2023.10.11.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출처: FTA 강국, KOREA(www.fta.go.kr)

- (협상) GCC 6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등과 협상 중

〈표 II -3〉 FTA 협상 진행 현황(2023년 11월 기준)

서명 및 타결국	추진현황	의의
1 GCC ¹⁾	(2007~2023.02) 7차례 협상 개최 (2021.01) 협상재개 합의 (2022.03~2023.10) 4차~8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2 우즈베키스탄	(2021.01) 협상개시선언 (2021.04~2021.11) 2차례 공식협상 개최	중앙아 최대시장
3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2021.10) 협상개시 (2021.11~2023.0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23.9.5.) 가입 타결식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4 MERCOSUR ²⁾	(2018.05) 협상개시 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남미 최대 시장
5 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6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7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8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22.07) 19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 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9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22.11) 9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10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23.11) 8차례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1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8.03~2020.10) 9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한국의 1위 서비스 수출국

1)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2)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출처: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이 밖에도 몽골, 조지아,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상태

〈표 II-4〉 FTA 협상 재개·개시 및 여건 조성 현황(2023년 11월 기준)

서명 및 타결국	추진현황	의의
1 몽골	(2023.3) 공청회 개최 (2023.9) ToR 합의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2 조지아	(2023.3) 공청회 개최 (2023.11) 협상 개시 선언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3 멕시코	(2005.09) 한-멕 SECA 추진 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 후 중단 (2022.03) 협상재개 선언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4 영국	(2022.02) 한-영 FTA 무역위 계기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2022.10) 공청회 개최 (2023.11) 개선협상 개시 선언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5 이집트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6 PA ¹⁾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중남미 신흥 시장

1) PA(태평양동맹)(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출처: FTA 강국, KOREA(www.fta.go.kr)

2. FTA 체결국 농식품 교역규모

- 2022년 FTA 발효국 58개국으로의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한 약 98억 9,397만 달러(한화 약 12조 8,819억 원)로 집계
 - 중국(22.2%), 일본(21.8%), 미국(16.5%), 베트남(9.9%), 태국(4.5%) 등으로 주로 수출

〈표 II-5〉 對FTA 발효국 농식품 수출액(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7,485,285	7,845,033	8,131,963	9,408,260	9,893,967	100.0	5.2	7.2
1 중국	1,501,625	1,628,705	1,580,481	2,065,983	2,197,127	22.2	6.3	10.0
2 일본	2,084,105	2,158,304	1,995,051	2,056,693	2,160,737	21.8	5.1	0.9
3 미국	1,080,029	1,171,342	1,519,797	1,656,639	1,632,559	16.5	-1.5	10.9
4 베트남	584,891	671,747	652,523	752,628	879,462	8.9	16.9	10.7
5 태국	409,142	398,218	391,742	402,370	443,584	4.5	10.2	2.0
6 인도네시아	227,184	197,674	209,861	285,376	318,314	3.2	11.5	8.8
7 필리핀	162,133	157,217	209,885	238,439	266,797	2.7	11.9	13.3
8 호주	164,936	161,222	189,350	195,166	223,824	2.3	14.7	7.9
9 캐나다	122,311	133,315	156,347	169,636	197,221	2.0	16.3	12.7
10 말레이시아	122,939	116,648	143,179	198,407	192,535	1.9	-3.0	11.9
11 싱가포르	135,972	145,216	171,357	198,828	190,329	1.9	-4.3	8.8
12 네덜란드	96,089	99,724	116,378	151,970	174,771	1.8	15.0	16.1
13 프랑스	79,191	73,451	58,652	100,097	116,196	1.2	16.1	10.1
14 캄보디아	90,085	102,526	96,736	105,607	113,362	1.1	7.3	5.9
15 독일	67,391	68,550	71,518	99,794	93,753	0.9	-6.1	8.6
16 영국	64,336	75,854	75,414	81,908	85,517	0.9	4.4	7.4
17 인도	48,949	54,232	70,657	106,893	75,447	0.8	-29.4	11.4
18 이탈리아	59,603	58,575	53,155	74,133	70,309	0.7	-5.2	4.2
19 스페인	48,367	42,948	60,405	56,114	55,652	0.6	-0.8	3.6
20 뉴질랜드	41,513	39,049	42,675	53,225	50,070	0.5	-5.9	4.8
21 이스라엘	24,004	27,498	27,221	34,318	42,057	0.4	22.6	15.1
22 튀르키예	18,489	26,989	30,919	54,364	40,473	0.4	-25.6	21.6
23 파나마	9,932	19,911	7,113	15,346	30,923	0.3	101.5	32.8
24 폴란드	33,488	28,151	20,373	25,178	27,463	0.3	9.1	-4.8
25 벨기에	15,743	17,811	11,063	21,798	23,700	0.2	8.7	10.8
26 덴마크	12,417	19,780	15,281	20,228	23,129	0.2	14.3	16.8
27 미얀마	16,102	17,674	18,440	18,606	20,853	0.2	12.1	6.7
28 칠레	14,313	16,157	16,319	27,514	19,834	0.2	-27.9	8.5
29 스웨덴	8,967	10,974	13,587	14,391	14,167	0.1	-1.6	12.1
30 포르투갈	15,644	8,842	11,121	12,367	12,697	0.1	2.7	-5.1
31 페루	4,796	7,090	4,927	10,486	9,843	0.1	-6.1	19.7
32 아일랜드	35,409	1,399	3,355	4,398	9,209	0.1	109.4	-28.6
33 슬로베니아	4,743	6,971	4,397	10,231	8,590	0.1	-16.0	16.0
34 콜롬비아	6,342	5,768	3,812	6,802	8,530	0.1	25.4	7.7
35 그리스	6,211	4,460	4,069	4,709	6,005	0.1	27.5	-0.8
36 스위스	6,910	9,468	21,689	24,419	5,972	0.1	-75.5	-3.6
37 체코	6,282	6,137	5,466	5,807	5,241	0.1	-9.7	-4.4
38 라오스	4,540	2,781	3,652	4,463	5,233	0.1	17.2	3.6
39 불가리아	6,786	6,053	5,961	5,304	4,883	0.0	-8.0	-7.9
40 루마니아	4,964	5,228	4,810	5,041	4,444	0.0	-11.8	-2.7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41 코스타리카	3,913	4,391	3,951	4,994	4,363	0.0	-12.6	2.8
42 오스트리아	4,891	3,541	3,331	4,891	4,250	0.0	-13.1	-3.5
43 리투아니아	2,632	4,319	3,896	2,810	3,591	0.0	27.8	8.1
44 노르웨이	6,182	4,968	3,999	3,725	3,342	0.0	-10.3	-14.3
45 헝가리	4,975	3,855	2,931	2,591	3,037	0.0	17.2	-11.6
46 브루나이	2,774	2,062	2,444	2,407	2,998	0.0	24.6	2.0
47 슬로바키아	2,186	2,680	2,192	2,002	2,112	0.0	5.5	-0.9
48 라트비아	2,598	1,906	1,237	1,441	2,055	0.0	42.7	-5.7
49 몰타	1,350	5,915	4,087	1,687	1,839	0.0	9.0	8.0
50 니카라과	896	793	1,001	1,246	1,214	0.0	-2.5	7.9
51 핀란드	454	512	463	739	1,110	0.0	50.3	25.0
52 엘살바도르	2,690	2,615	2,268	1,542	970	0.0	-37.1	-22.5
53 에스토니아	638	1,220	384	370	827	0.0	123.4	6.7
54 키프로스 공화국	449	813	451	769	571	0.0	-25.8	6.2
55 크로아티아	34	91	67	130	406	0.0	213.2	85.8
56 온두라스	823	1,027	395	483	390	0.0	-19.2	-17.0
57 아이슬란드	931	666	130	759	83	0.0	-89.0	-45.3
58 룩셈부르크	0	0	1	1	1	0.0	42.0	82.6

*주: EFTA 체결국 중 리히텐슈타인으로의 수출액은 집계되지 않음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3.12.18.)

II. 신규 발효 FTA 및 협정내용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 협정개요

(1) 협정내용

- 2013년 5월 협상 개시 후 약 8년간의 협상 끝에 2022년 2월 1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효
 -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에는 아시아 15개국이 참여
 - 아세안 10개국(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동아시아 3개국(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가 참여함
 - 일본과는 RCEP을 통해 무역협정을 최초로 체결하게 됨
 - RCEP은 전 세계 GDP 및 교역규모의 약 30%에 달하며 역내 인구 또한 23억 명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블록과 체결한 경제협정임
 -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Mega FTA로, 거대 경제 블록과의 안정적인 역내·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의의를 가짐¹⁾
 -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한 상태

1)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KOTRA(2019.11.)

〈표 II -1〉 RCEP 협정국과의 FTA 체결현황

구분	RCEP	FTA 체결현황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중국	○	○							
일본	○								
베트남	○		○	○					
태국	○		○						
싱가포르	○		○		○				
필리핀	○		○						
미얀마	○		○						
말레이시아	○		○						
라오스	○		○						
인도네시아	○		○						○
캄보디아	○		○					○	
브루나이	○		○						
호주	○					○			
뉴질랜드	○						○		

*주: 한-필리핀 FTA는 2023년 9월 7일 정식 서명하였으며,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FTA 등은 협상 중(2023년 11월 기준)

*출처: 농식품 수출을 위한 RCEP 협정 활용 매뉴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05.)

- RCEP은 ▲협정국 간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기체결한 FTA 보완 등의 내용으로 구성
 -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 및 가공할 경우 재료 누적이 인정됨
 - 역내국 간 통일된 원산지 인정 기준을 도입하고 원산지 증명방법이 다양화 되면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 또한, 기존 양자간 FTA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 개방함

〈표 II-2〉 국가별 기존 FTA 대비 추가 RCEP 양허품목

대상국	양허유형 ¹⁾	품목
브루나이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싱가포르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캄보디아	즉시 철폐	치즈, 쇠고기, 고구마 등
	13년	과일주스, 사과, 송로버섯, 참깨
	15년	키위, 사과, 포도, 돼지고기 등
	20년	닭고기, 자두, 숯박, 파인애플, 양배추 등
인도네시아	즉시 철폐	인삼류, 배, 사과, 감, 포도 등
	10년	소스류, 면류, 고추루, 강낭콩, 파인애플, 딸기 등
	15년	음료, 마늘, 양배추, 레몬, 녹차 등
	20년	가금육류 등
라오스	즉시 철폐	곡류조제품(콘플레이크, 기타) 등
	15년	자당(고체) 등
	20년	양배추(신선), 올리브(일시저장), 잎담배 등
말레이시아	즉시 철폐	기타육류
미얀마	즉시 철폐	기타산동물, 면, 곡류 등
	13년	식물성유지, 박류, 식물성한약재 등
	20년	기타 식물성유지, 유지가공품 등
필리핀	즉시 철폐	소스류, 사료 등
	15년	맥주, 위스키, 돼지고기, 시금치, 기타과실, 땅콩 등
태국	즉시 철폐	딸기, 감, 면류 등
	10년	과일주스, 초콜릿 등
	15년	마늘, 견과류, 고추류 등
	20년	주류(브랜디, 맥주, 리큐르) 등
베트남	즉시 철폐	배, 포도, 딸기 등
	10년	음료, 인삼조제품, 조제분유, 라면, 커피조제품, 캔디 등
	20년	김 등
	25년	닭고기, 에틸알코올 등
호주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뉴질랜드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중국	즉시 철폐	맥주, 채소종자 등
	10년	포도, 김 등
	15년	과실주스 등
	20년	오징어 등
	35년	홍삼조제품 등
일본	10년	김, 식초, 소주 등
	20년	막걸리 등

1) 균등철폐 품목의 철폐 스케줄 완성 연도

*출처: 농식품 수출을 위한 RCEP 협정 활용 매뉴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05.)

□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베트남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이 20년 내 철폐될 예정²⁾

- RCEP을 통해 전체 상품에 대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86.0%(7,118개)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 철폐

2) RCEP 상세 설명자료(2021.10.)

- 한-중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0.5%(41개)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 추가 철폐하며 기체결 FTA의 철폐 범위 내에서 개방적인 수준을 유지
- 일본은 전체 상품 중 품목 수 기준 83.0%(7,548개)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
- 베트남은 전체 상품에 대해 품목 수 기준 86.7%(8,284개)의 관세를 15년 내 철폐
- 기존 체결한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3.4%(326개)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추가 철폐
- 최종적으로, 기체결 FTA 및 RCEP을 통해 품목수 기준 92.3%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

〈표 II-3〉 중국·일본·베트남의 한국산 상품 양허 수준

구분		중국	일본	베트남
기체결 FTA	품목수(개)	7,499	-	8,498
	비중(%)	90.6	-	88.9
RCEP	품목수(개)	7,118	7,548 ¹⁾	8,284
	비중(%)	86.0	83.0	86.7
추가 관세 철폐	품목수(개)	41	-	326
	비중(%)	0.5	-	3.4
최종 관세 철폐	품목수(개)	7,540	7,548	8,824
	비중(%)	91.1	83.0	92.3

1) 동일 품목에 대한 TRQ 세번은 전체 품목 수에서 제외

*출처: RCEP 상세 설명자료(2021.10.) 재가공

(2) 원산지규정

□ RCEP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원산지 상품) RCEP 협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원산지 누적)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경우, 최종 상품 또는 재료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간주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對중국·일본·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특혜 관세 대우를 위해 다음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

<표 II-4> 對중국·일본·베트남 수출품목별 RCEP 원산지 규정

국가	품목명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중국	라면	19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조제품 기타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자당	1701.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기타 무알콜 음료	22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조제분유	19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건조김	12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조미김	2008.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홍삼	1211.20	완전생산기준
	과일주스	22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곡류 조제품	1904.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커피 농축물	21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과일주스 주기제	2009.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기타 리큐르류	2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소스 조제품	21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기타 조제 유자	2008.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베이커리류	19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홍삼조제품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인삼음료	22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비스킷류	19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견과류 조제품	2008.19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본	조제품 기타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단고추	0709	완전생산기준
	설탕과자류	17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조미김	2008.19	2단위 세번변경기준
	김치	20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라면	19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양조식초	22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건조김	12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코코아 가루	18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소주	2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에틸알코올	22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스 조제품	21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당시럽 혼합	17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곡물발효주	22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속을 채운 파스타	19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베이커리용 혼합물	19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비스킷류	19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맥주	22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무알콜음료	22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	2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국가	품목명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베트남	미절단 냉동 닭고기	0207.12	2단위 세번변경기준(HS 코드 01류는 제외)
	조제식료품 기타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기타 무알콜 음료	2202.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홍삼 조제품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조미김	2008.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조제분유	1901.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변성 에틸알코올	2207.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과당 시럽	1702.6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라면	1902.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삼음료	2202.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닭 절단육	0207.14	2단위 세번변경기준(HS 코드 01류는 제외)
	커피크리머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신선 딸기	0810.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스 조제품	2103.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신선 배	0808.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신선 포도	0806.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동물성 유지 기타	1506.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냉동 닭다리	0207.14	2단위 세번변경기준(HS 코드 01류는 제외)
	소주	22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비스킷류	19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출처: RCEP 협정문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선택 가능

- (기관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서류 및 전자적 형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자율발급)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음

나. 중국

(1) 농산물 양허·개방현황

□ 대부분의 농산물 품목이 한-중 FTA를 통해 양허된 상태

- RCEP을 통해 중국이 추가로 관세를 철폐하는 농산물 품목은 없음
 - 이는 기존 체결한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

〈표 II-5〉 한-중국 RCEP 농산물 추가 양허현황

구분	한국 양허		중국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계(기체결 FTA 대비 추가 철폐)	4	0.0	-	-
즉시 철폐	1	0.0	-	-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3	0.0	-	-

1) HS 2012 기준

*출처: RCEP 상세 설명자료(2021.10.),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06.)

- 한-중 FTA 결과, 중국은 초민감품목 102개를 제외한 1,029개 품목(91.0%)에 대해 20년 내 관세 철폐
 - (일반품목) 신선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와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품목은 10년 내 관세 철폐
 - (민감품목) 신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과일주스, 김치, 무알콜 음료, 커피 조제품 등은 15~20년 내 관세 철폐
 - (초민감품목) 쌀, 설탕, 밀가루 등 품목은 한-중 FTA에서 양허 제외되었으며, 이들 품목은 기존 체결한 FTA에서도 양허 제외된 전통적인 민감 품목임

〈표 II-6〉 한-중국 FT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중국측)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 품목
일반 품목	즉시 철폐	221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5년 철폐	65	단백질계 물질, 냉동 오렌지주스, 볶지 않은 커피 등
	10년 철폐	439	신선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볶은 커피, 소시지, 물 등
10년 이내 철폐		725	
민감 품목	15년 철폐	203	신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20년 철폐	101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간장 등
20년 이내 철폐		304	
초민감 품목	부분 감축	1	기타조제식료품(20%→18.4%)
	양허 제외	101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총계		1,131	

*출처: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06.)

(2)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개방현황

- 2022년 對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21억 9,713만 달러(한화 약 2조 8,606억 원)로 집계됨
 - 라면(8.6%), 조제품 기타(5.9%), 자당(4.4%), 기타 무알콜음료(3.5%), 조제분유(3.4%) 등이 주로 수출됨

〈표 II-7〉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1,501,625	1,628,705	1,580,481	2,065,983	2,197,127	100.0	6.3	10.0
1 라면	93,290	124,435	149,096	149,898	188,920	8.6	26.0	19.3
2 조제품 기타	55,074	39,738	82,310	109,899	129,285	5.9	17.6	23.8
3 자당	80,681	69,698	81,876	85,087	96,130	4.4	13.0	4.5
4 기타 무알콜 음료	37,007	50,203	53,511	73,391	76,237	3.5	3.9	19.8
5 조제분유	78,995	73,774	62,050	72,889	73,794	3.4	1.2	-1.7
6 건조김	12,241	38,953	21,886	45,674	48,873	2.2	7.0	41.4
7 조미김	N/A	17,171	78,978	93,703	47,415	2.2	-49.4	N/A
8 홍삼	25,048	34,225	34,483	43,834	43,859	2.0	0.1	15.0
9 과일주스	18,922	21,709	21,652	43,797	41,116	1.9	-6.1	21.4
10 곡류 조제품	8,337	8,302	15,953	30,882	29,096	1.3	-5.8	36.7
11 커피 농축물	17,137	24,948	23,176	31,829	28,901	1.3	-9.2	14.0
12 과일주스 주기제	34,136	28,310	23,114	28,355	26,222	1.2	-7.5	-6.4
13 기타 리큐르류	1,836	7,235	13,797	22,102	25,590	1.2	15.8	93.2
14 소스 조제품	18,482	24,080	36,595	34,789	24,850	1.1	-28.6	7.7
15 기타 조제 유자	18,900	16,665	15,950	19,902	19,574	0.9	-1.6	0.9
16 베이커리류	11,358	10,960	15,266	24,059	19,023	0.9	-20.9	13.8
17 홍삼조제품	8,370	13,557	17,207	22,074	18,793	0.9	-14.9	22.4
18 인삼음료	5,209	13,655	22,904	27,827	17,220	0.8	-38.1	34.8
19 비스킷류	12,154	9,650	10,714	18,318	15,764	0.7	-13.9	6.7
20 견과류 조제품	9,323	13,719	16,676	16,355	10,849	0.5	-33.7	3.9

*주: HS CODE 1902.30-1010, 2106.90-9099, 1701.99-0000, 2202.99-9000, 1901.10-1010, 1212.21-1010, 2008.99-5010, 1211.20-1391, 2202.99-2000, 1904.10-9000, 2101.11-1000, 2009.90-1090, 2208.70-9000, 2103.90-9090, 2008.30-1000, 1905.90-1090, 2106.90-3029, 2202.99-1000, 1905.90-1040, 2008.19-9000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3.12.18.)

-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의 RCEP 관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중국은 한-중 FTA 및 RCEP의 양허 유형을 단계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함

〈표 II-8〉 한-중 FTA 및 RCEP 양허유형(중국 측)

구분	양허유형		내용
한-중 FTA	공통	0	·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 철폐(협정 발효일부터 무관세 적용)
		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10-A	·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PR-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를 유지)
		PR-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를 유지)
		PR-3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를 유지)
		E	· 기준세율 유지
	중국	15-A	·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PR-8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를 유지)
		PR-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를 유지)
		PR-3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를 유지)
PR-5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를 유지)	
RCEP	즉시철폐*	0	·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 철폐(협정 발효일로부터 무관세 적용)
	과도기*	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부분감축*	15-C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4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이행 15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이행 3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를 유지)
양허제외	U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	

* 'U' 를 제외한 양허유형은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 양허표를 참고하여 임의로 구분한 것

*출처: 한-중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RCEP 협정문 부속서 1,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한국 농촌경제연구원(2022.05.)

- 對중국 수출상위 품목 대부분은 RCEP 양허 제외 대상임
 - 라면(중국 HS 19023030), 자당(HS 17019990), 조제분유(HS 19011010), 건조김(HS) 조미김(중국 HS 20089931), 홍삼(HS 12112099) 등 상위 수출품목은 RCEP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
- 조제품 기타(HS 21069090) 및 홍삼조제품(HS 21069090)은 RCEP 협정에 따라 부분감축(양허유형 15-C) 대상에 해당
 - 이행 1년차(2022년)부터 14년차(2035년) 사이 기준세율이 적용되나, 15년차(2036년) 1월 1일부터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됨
 - 이행 35년차(2056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세율의 80% 수준을 유지하게 됨
 - 조제품 기타 및 홍삼조제품은 한-중 FTA에서 정하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양허유형 PR-8)'하는 품목이며,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를 유지함
- 과일주스 주기제(HS 20099010)는 중국의 RCEP 협정 발효일(2022.01.01.)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
 - 2023년 한국산 세율은 17.3% 수준이며,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는 무관세가 적용
- 견과류 조제품(HS 20081999)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
 - 2023년 한국산 세율은 8% 수준이며,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표 II -9〉 對중국 수출품목별 FTA 양허 현황

(단위: %)

구분	기준세율	한-중 FTA (양허유형)	RCEP	
			양허유형	'23년세율 ¹⁾
1 라면 (HS 19023030)	15	20	U	양허 제외
2 조제품 기타 (HS 21069090)	20	PR-8	15-C	20.0
3 자당 (HS 17019990)	50	E	U	양허 제외
4 기타 무알콜 음료(HS 22029900)	35	20	N/A	N/A
5 조제분유 (HS 19011010)	15	E	U	양허 제외
6 건조김 (HS 12122110)	20	15	U	양허 제외
7 조미김 (HS 20089931)	15	20	U	양허 제외
8 홍삼 (HS 12112099)	20	E	U	양허 제외
9 과일주스 (HS 22029900)	35	20	N/A	N/A
10 곡류 조제품 (HS 190410)	25	20	U	양허 제외
11 커피 농축물 (HS 21011100)	17	15	U	양허 제외
12 과일주스 주기계 (HS 20099010)	20	15	15	17.3
13 기타 리큐르류 (HS 22087000)	10	10	U	양허 제외
14 소스 조제품 (HS 21039090)	21	20	U	양허 제외
15 기타 조제 유자 (HS 20083090)	20	20	U	양허 제외
16 베이커리류 (HS 19059000)	20	20	U	양허 제외
17 홍삼조제품 (HS 21069090)	20	PR-8	15-C	20
18 인삼음료 (HS 22029900)	35	20	N/A	N/A
19 비스킷류 (HS 19059000)	20	20	U	양허 제외
20 견과류 조제품 (HS 20081999)	10	10	10	8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차 세율 적용

*주1: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한국산 수출 HSK Code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제 상대국 수입 HS Code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RCEP 양허표는 협정 부속서에 따라 HS 2012에 기초하며, 첫 번째 관세 인하 이행 연도는 협정 발효일(2022.01.01.)로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함

*출처: 한-중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RCEP 협정문 부속서 1 관세양허표

다. 일본

(1) 농산물 양허 · 개방현황

□ 일본은 RCEP을 통해 품목 수 기준 54.1%(930개)의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20년 내 철폐

-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민감성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으로 개방에 협의
 - (즉시 철폐) 조제식품(인스턴트티), 음료(생수, 탄산수), 유지가공품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
 - (10년 내 철폐) 신선·냉장 송이버섯, 딸기(조제), 과일혼합물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에 해당
 - (15년 내 철폐) 배합사료, 기타과실, 포도주 등은 1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에 해당
 - (20년 내 철폐) 증류주(소주) 및 발효주(막걸리)는 20년 내 관세 철폐

〈표 II-10〉 한-일본 RCEP 농산물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일본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전체 농산물	1,623	100.0	1,720	100.0
RCEP	750	46.2	930	54.1
즉시철폐	307	18.9	649	37.7
10년 철폐	374	23.0	205	11.9
15년 철폐	67	4.1	74	4.3
20년 철폐	2	0.1	2	0.1

*출처: RCEP 상세 설명자료(2021.10.)

- 김치, 파프리카, 음료베이스, 어육(참다랑어) 등은 양허 제외

(2)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 · 개방현황

□ 2022년 對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1억 6,074만 달러 (한화 약 2조 8,132억 원)로, 전년 대비 5.1% 증가

- 조제품 기타(4.1%), 단고추(3.4%), 설탕과자류(3.2%), 조미김(3.1%), 김치(2.8%) 등이 주로 수출됨

〈표 II -11〉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2,084,105	2,158,304	1,995,051	2,056,693	2,160,737	100.0	5.1	0.9
1 조제품 기타	108,664	94,909	97,918	107,356	89,402	4.1	-16.7	-4.8
2 단고추	91,821	91,244	86,211	81,795	72,880	3.4	-10.9	-5.6
3 설탕과자류	69,031	69,852	67,146	62,669	69,603	3.2	11.1	0.2
4 조미김	N/A	21,060	78,073	74,508	67,660	3.1	-9.2	N/A
5 김치	56,104	55,184	71,099	80,124	60,996	2.8	-23.9	2.1
6 라면	31,676	33,745	54,545	65,277	60,627	2.8	-7.1	17.6
7 양조식초	8,378	26,794	38,592	54,753	58,655	2.7	7.1	62.7
8 건조김	55,671	59,006	54,697	39,615	40,880	1.9	3.2	-7.4
9 코코아 가루	29,564	30,429	32,196	30,982	37,525	1.7	21.1	6.1
10 소주	49,095	44,557	40,643	35,848	35,669	1.7	-0.5	-7.7
11 에틸알코올	28,717	35,228	23,557	17,836	35,384	1.6	98.4	5.4
12 소스 조제품	11,221	12,011	13,344	17,924	23,726	1.1	32.4	20.6
13 당시럽 혼합	27,240	27,080	23,285	21,493	23,182	1.1	7.9	-4.0
14 곡물발효주	60,453	34,276	35,041	28,744	21,599	1.0	-24.9	-22.7
15 속을 채운 파스타	3,944	5,427	8,955	15,181	21,574	1.0	42.1	52.9
16 베이커리용 혼합물	21,763	21,039	18,633	19,370	15,520	0.7	-19.9	-8.1
17 비스킷류	4,911	4,632	5,638	7,546	12,995	0.6	72.2	27.5
18 맥주	2,236	1,869	1,718	6,685	10,703	0.5	60.1	47.9
19 기타 무알콜음료	8,074	3,130	4,302	8,420	10,194	0.5	21.1	6.0
20 기타 리프트 및 코철	13,541	12,945	6,300	14,975	10,131	0.5	-32.3	-7.0

*주: HS CODE 2106.90-9099, 0709.60-1000, 1704.90-9000, 2008.99-5010, 2005.99-1000, 1902.30-1010, 2209.00-1000, 1212.21-1010, 1806.10-0000, 2208.90-4000, 2207.10-9090, 2103.90-9090, 1702.90-9000, 2206.00-2090, 1902.20-0000, 1901.20-9000, 1905.90-1040, 2203.00-0000, 2202.99-9000, 2208.70-9000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3.12.18.)

□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 중 양조식초, 소주, 곡물발효주, 맥주 등은 RCEP 협정세율을 이용하여 수출 가능

- (양조식초, 일본 HS 220900000) 10년간 관세가 균등 철폐되는 품목으로, 2023년 기준 3년차 세율 5.5% 적용
- (소주, HS 220890129) 20년간 관세가 균등 철폐되는 품목으로, 2023년 기준 3년차 세율 13.7% 적용
- (곡물발효주, HS 220600299) 20년 철폐 품목으로, 2023년 기준 3년차 세율 1 당 36.34엔(한화 약 333원) 적용
- (맥주, HS 220300000) WTO 협정 및 RCEP에 따라 무관세 적용
- 이 밖에 조제품 기타(HS 210690299), 단고추(HS 070960010), 설탕과자류(HS 170490290) 등은 RCEP 양허 대상에서 제외

<표 II -12> 對일본 수출품목별 FTA 양허 현황

(단위: %)

구분	기준세율 ¹⁾	RCEP		양허내용
		양허유형	'23년세율 ²⁾	
1	조제품 기타 (HS 210690299)	15.0	U	양허 제외
2	단고추 (HS 070960010)	3.0	U	양허 제외
3	설탕과자류 (HS 170490290)	25.0	U	양허 제외
4	조미김 ³⁾ (HS 200899217)	11.0	N/A	N/A
5	김치 (HS 200599190)	13.4	U	양허 제외
6	라면 (HS 190230290)	21.3	U	양허 제외
7	양조식초 (HS 220900000)	7.5	10년 철폐	5.5 (1년차) 6.8% → (10년차) 0.7% → (10년차 이후) 무관세
8	건조김 (HS 121221100)	N/A	U	양허 제외
9	코코아 가루 (HS 180610100)	29.8	U	양허 제외
10	소주 (HS 220890129)	16.0	20년 철폐	13.7 (1년차) 15.2% → (20년차) 0.8% → (20년차 이후) 무관세
11	에틸알코올 (HS 220710190)	10.0	U	양허 제외
12	소스 조제품 (HS 210390229)	10.5	U	양허 제외
13	당시럽 혼합 (HS 170290219)	N/A	U	양허 제외
14	곡물발효주 (HS 220600299)	42.40 yen/ l	20년 철폐	36.34 yen/ l (1년차) 40.38yen/ l → (20년차) 2.02yen/ l → (20년차 이후) 무관세
15	속을 채운 파스타 (HS 190220199)	N/A	U	양허 제외
16	베이커리용 혼합물 (HS 190120117)	N/A	U	양허 제외
17	비스킷류 (HS 190590100)	N/A	U	양허 제외
18	맥주 (HS 220300000)	N/A	Free	무관세
19	기타 무알콜음료 (HS 220299)	N/A	N/A	N/A
20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 (HS 220870000)	N/A	Free	무관세

1) WTO 협정세율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차 세율 적용

3) 2023년 9월 기준 일본 세관 품목분류(RCEP 양허표에는 분류되지 않음)

*주1: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한국산 수출 HSK Code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제 상대국 수입 HS Code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RCEP 양허표는 협정 부속서에 따라 일본 국가품목분류표에 기초하며, 첫 번째 관세 인하 이행 연도는 협정 발효일 (2022.01.01.)로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함

*출처: RCEP 협정문 부속서1 관세 양허표,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검색일: 2023.12.20.)

라. 베트남

(1) 농산물 양허 · 개방현황

□ 기체결 FTA 및 RCEP을 통해 품목 수 기준 92.6%(1,183개)의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최종 철폐

- RCEP을 통해 베트남은 전체 농산물 중 품목 수 기준 84.9%(1,085개)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로 철폐
- 기체결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0.2%(2개)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 추가 철폐되었으며, 주류와 기타 농산가공품이 해당됨

〈표 II-13〉 한-베트남 농산물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전체 농산물	1,623	100.0	1,278	100.0
기체결 FTA ¹⁾	1,215	74.9	1,181	92.4
RCEP	1,029	63.4	1,085	84.9
RCEP 추가 철폐	75	4.6	2	0.2
즉시 철폐	3	0.2	-	-
10년 철폐	24	1.5	2	0.2
15년 철폐	39	2.4	-	-
20년 철폐	9	0.6	-	-
총계 ²⁾	1,290	79.5	1,183	92.6

1) 한-아세안 + 한-베트남 FTA

2) 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 + RCEP

*출처: RCEP 상세 설명자료(2021.10.)

(2)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 · 개방현황

□ 2022년 對베트남 수출액은 8억 7,946만 달러(한화 약 1조 1,450억 원)로, 전년 대비 16.9% 증가

- 미절단 냉동 닭고기(6.7%), 조제식료품 기타(6.6%), 기타 무알콜 음료(5.9%), 홍삼 조제품(2.7%), 조미김(2.2%) 등이 주로 수출됨

〈표 II-14〉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584,891	671,747	652,523	752,628	879,462	100	16.9	10.7
1 미절단 냉동 닭고기	15,097	29,007	35,667	0	58,962	6.7	N/A	40.6
2 조제식료품 기타	15,426	25,311	35,022	46,180	57,651	6.6	24.8	39.0
3 기타 무알콜 음료	26,736	31,868	31,475	34,427	51,804	5.9	50.5	18.0
4 홍삼 조제품	7,445	10,102	10,378	15,017	23,461	2.7	56.2	33.2
5 조미김	N/A	2,597	10,793	15,716	18,978	2.2	20.8	N/A
6 조제분유	8,554	14,164	18,779	19,541	17,387	2.0	-11.0	19.4
7 변성 에틸알코올	511	222	11,026	16,935	16,860	1.9	-0.4	139.7
8 과당 시럽	13,851	23,449	19,552	16,124	16,003	1.8	-0.8	3.7
9 라면	14,871	19,160	16,854	17,068	15,925	1.8	-6.7	1.7
10 인삼음료	2,743	5,512	7,689	8,756	15,187	1.7	73.4	53.4
11 기타 닭 절단육	2,409	4,760	6,748	6,846	11,727	1.3	71.3	48.5
12 커피크리머	2,734	3,338	4,373	6,405	9,846	1.1	53.7	37.8
13 신선 딸기	3,655	6,686	6,489	7,332	9,706	1.1	32.4	27.7
14 소스 조제품	4,582	7,882	7,253	8,671	9,595	1.1	10.7	20.3
15 신선 배	16,450	16,054	8,478	5,738	9,386	1.1	63.6	-13.1
16 신선 포도	4,393	5,914	8,148	9,003	9,132	1.0	1.4	20.1
17 동물성 유지 기타	3,779	6,227	6,001	6,514	8,412	1.0	29.1	22.1
18 냉동 닭다리	6,187	10,868	6,745	6,870	6,773	0.8	-1.4	2.3
19 소주	5,501	4,229	3,846	3,657	6,749	0.8	84.6	5.2
20 비스킷류	3,114	3,805	4,395	4,498	5,720	0.7	27.2	16.4

*주: HS CODE 0207.12-0000, 2106.90-9099, 2202.99-9000, 2106.90-3029, 2008.99-5010, 1901.10-1010, 2207.20-0000, 1702.60-2000, 1902.30-1010, 2202.99-1000, 0207.14-1090, 2106.90-9010, 0810.10-0000, 2103.90-9090, 0808.30-0000, 0806.10-0000, 1506.00-9000, 0207.14-1010, 2208.90-4000, 1905.90-1040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3.12.18)

□ 대부분의 수출품목에 10년 내 관세 철폐 혜택 발생

- 베트남은 발효된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양허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

<표 II -15>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 양허유형(베트남 측)

구분	양허유형	내용
한-베트남 FTA	Y-1	· 협정 발효일에 완전히 철폐
	Y-3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Y-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Y-7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Y-8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Y-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Y-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S-2	·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 유지,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
	S-3	· 2017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 유지, 2017년 1월 1일까지 20퍼센트로 인하,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그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고,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
	A	·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 유지, 2021년 1월 1일까지 50퍼센트 이하로 인하
	B-2	·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 유지, 2021년 1월 1일까지 한국-아세안 FTA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2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
E	· 기준관세율 유지	
한-아세안 FTA	NT (Normal Track)	· 일반품목: 2018년 1월 1일 기준 무관세
	SL ¹⁾ (Sensitive List)	· 민감품목: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 2021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
	HSL ²⁾ (Highly Sensitive List)	· 초민감품목 * A그룹: 2021년까지 50% 관세율 상한 적용 * B그룹: 2021년까지 20%만큼 관세율 인하 * C그룹: 2021년까지 50%만큼 관세율 인하 * D그룹: 2021년까지 최소 수입물량 적용 * E그룹: 2021년까지 양허 제외
RCEP	U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외

1) 상한선: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수입액 25%

2) 상한선: HS 6단위 200개 또는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출처: 한-베트남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1, 부속서 2,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외교통상부, 2007.04.), RCEP 협정문 부속서 1

- **(즉시 철폐)** 신선 딸기(HS 08101000) · 배(HS 080830000) · 포도(HS 08061000) 등 신선 농산물은 RCEP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
- **(10년 철폐)** 조제식료품 기타(HS 21069099), 기타 무알콜 음료(HS 20229090), 홍삼 조제품(HS 21069092) 등은 RCEP에 따라 10년 철폐 대상에 해당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CEP 2년차 세율이 적용되어 조제식료품 기타 및 홍삼 조제품은 12%, 기타 무알콜 음료는 16% 세율 적용
 - 세 품목 모두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NT)으로 분류되어 관세 철폐
- 이 밖에도 RCEP에 따라 미절단 냉동 닭고기(HS 02071200)는 25년차 이후 30%, 조미김(HS 20089990)은 20년차 이후 15% 세율 적용
 - 미절단 냉동 닭고기의 경우 한 베트남 FTA에 따라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므로(양허유형 Y-8) 한국산 수출 시 무관세 적용

〈표 II -16〉 對베트남 수출품목별 FTA 양허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기준세율 ¹⁾	한-베트남 FTA (양허유형)	한-아세안 FTA (양허유형)	RCEP	
				양허유형	'23년세율 ²⁾
1 미절단 냉동 닭고기 (HS 02071200)	40	Y-8	NT	25년차 이후(30%)	40
2 조제식료품 기타 (HS 21069099)	15	N/A	NT	10년 철폐	12
3 기타 무알콜 음료 (HS 22029090)	20	N/A	NT	10년 철폐	16
4 홍삼 조제품 (HS 21069092)	15	N/A	NT	10년 철폐	12
5 조미김 (HS 20089990)	30	N/A	NT	20년 철폐(15%)	30
6 조제분유 (HS 19011020)	10	N/A	NT	10년 철폐	8
7 변성 에틸알코올 (HS 22072011)	20	N/A	NT	25년차 이후(15%)	20
8 과당 시럽 (HS 17026020)	15	N/A	NT	즉시 철폐	0
9 라면 (HS 19023040)	30	N/A	NT	10년 철폐	24
10 인삼음료 (HS 22029090)	20	N/A	NT	10년 철폐	16
11 기타 닭 절단육 (HS 02071499)	20	Y-8	NT	N/A	20
12 커피크리머 (HS 21069030)	20	N/A	NT	10년 철폐	16
13 신선 딸기 (HS 08101000)	15	N/A	NT	즉시 철폐	0
14 소스 조제품 (HS 21039090)	20	N/A	NT	10년 철폐	16
15 신선 배 (HS 08083000)	10	N/A	NT	즉시 철폐	0
16 신선 포도 (HS 08061000)	10	N/A	NT	즉시 철폐	0
17 동물성 유지 기타 (HS 15060000)	10	N/A	NT	즉시 철폐	0
18 냉동 닭다리 (HS 02071420)	20	Y-8	NT	N/A	20
19 소주 (HS 22089090)	45	E	HSL A	N/A	45
20 비스킷류 (HS 19059020)	20	N/A	NT	10년 철폐	16

1) RCEP 기준세율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차 세율 적용

*주1: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한국산 수출 HSK Code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제 상대국 수입 HS Code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RCEP 양허표는 협정 부속서에 따라 HS 2012에 기초하며, 첫 번째 관세 인하 이행 연도는 협정 발효일(2022.01.01.)로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함

*출처: RCEP 협정문 부속서1 관세 양허표

2. 한-이스라엘 FTA

가. 협정개요

- 2022년 12월 1일 한-이스라엘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10년 이내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
 - 한-이스라엘 FTA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 또한,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달성
 - 이스라엘은 전체 상품 8,280개 품목 중 95.1(7,873개)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며, 특히 7,868개 품목은 10년 내 철폐

〈표 II-17〉 한-이스라엘 FTA 최종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이스라엘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관세 철폐	11,661	95.3	7,873	95.1
즉시철폐	9,661	78.9	6,032	72.9
유관세	7,702	62.9	1,401	16.9
무관세	1,959	16.0	4,631	55.9
3년 철폐	201	1.6	567	6.8
5년 철폐	1,105	9.0	1,037	12.5
6-8년 철폐	78	0.6	44	0.5
10년 철폐	491	4.0	188	2.3
12-15년 철폐	123	1.0	5	0.1
16-19년 철폐	2	-	-	-
관세감축	15%	2	13	0.2
	25%	-	3	-
TRQ	-	-	3	-
양허제외/협정제외	580	4.7	388	4.7
총계	12,243	100.0	8,280	100.0

*주1: HS 2016 기준

*주2: 우리측 품목수는 세번 분리 48개 미반영(반영 시 총 12,291개)

*출처: 한·이스라엘 FTA 상세설명자료(2021.05.)

나. 농산물 양허 · 개방현황

-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은 총 1,159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523개 품목(45.1%)이 즉시 철폐 대상에 해당하며, 5년 이내 635개(54.8%), 10년 이내 787개(67.9%)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
 - 양송이, 두류, 곡분 등은 관세감축 대상에 해당하여 발효와 동시에 관세감축 후 유지
 - 어육, 대두유, 포도주, 음료베이스, 과일주스, 감자, 토마토 등 특정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

〈표 II-18〉 한-이스라엘 FTA 농산물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이스라엘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관세 철폐	1,072	66.1	791	68.2
즉시철폐	279	17.2	523	45.1
3년 철폐	49	3.0	-	-
5년 철폐	355	21.9	112	9.7
6년 철폐	1	0.1	-	-
7년 철폐	37	2.3	3	0.3
8년 철폐	1	0.1	-	-
10년 철폐	250	15.4	149	12.9
12년 철폐	59	3.6	2	0.2
15년 철폐	39	2.4	2	0.2
16년 철폐	1	0.1	-	-
19년 철폐	1	0.1	-	-
관세감축	2	0.1	16	1.4
TRQ	-	-	2	0.2
양허제외/협정제외	549	32.8	350	30.2
총계	1,623	100.0	1,159	100.0

*주: HS 2016 기준

*출처: 한·이스라엘 FTA 상세설명자료(2021.05.)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최초로 농산물 TRQ³⁾ 물량 확보
 -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냉동 닭고기(HS 02071200, 02071400, 이스라엘 기준) 및 참치 통조림(HS 16041490, 이스라엘 기준)은 일정 물량 내 특혜 관세 적용 가능

〈표 II-19〉 이스라엘의 농산물 TRQ 적용 대상

품명	HS 코드	한도 물량	적용 관세율
냉동 닭고기	02071200, 02071400	연간 1,000 메트릭톤 이내	협정 발효일부부터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 적용 (양허유형: “MFN-50%”)
		연간 1,000 메트릭톤 초과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참치 통조림	16041490	연간 200 메트릭톤 이내	무관세
		연간 200 메트릭톤 초과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2022.12.16.)

다.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개방현황

- 2022년 對이스라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4,206만 달러(한화 약 547억 원)로, 전년 대비 22.6% 증가
 - 커피 농축물(78.8%),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4.3%), 조미 김(3.6%), 라면(1.7%), 조제식료품(1.0%) 등이 주로 수출됨

3)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저율 관세할당 물량’ 또는 ‘시장접근 물량’으로도 불림

<표 II-20>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24,004	27,498	27,221	34,318	42,057	100.0	22.6	15.1
1 커피 농축물	17,921	21,184	20,494	23,510	33,125	78.8	40.9	16.6
2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	831	951	1,260	1,643	1,821	4.3	10.8	21.7
3 조미김	N/A	141	1,005	1,021	1,518	3.6	48.7	N/A
4 라면	43	136	379	770	730	1.7	-5.2	103.0
5 조제식료품	256	278	226	343	435	1.0	26.8	14.2
6 소스 조제품	55	67	62	131	207	0.5	58.0	39.3
7 베이커리제품	45	120	56	172	161	0.4	-6.4	37.5
8 쌀가루 조제식료품	N/A	2	51	69	121	0.3	75.4	N/A
9 베이커리 혼합물	323	284	144	272	110	0.3	-59.6	-23.6
10 브라질넛	N/A	N/A	N/A	0	82	0.2	N/A	N/A
11 곡물 기타	90	60	90	29	80	0.2	175.9	-2.9
12 고추장	16	19	20	52	64	0.2	23.1	41.4
13 김치		0	13	31	64	0.2	106.5	N/A
14 건조김	123	56	64	88	56	0.1	-36.4	-17.9
15 동식물성 유지 기타	N/A	N/A	N/A	5	30	0.1	500.0	N/A
16 조제품 기타	0	0	0	2	29	0.1	1350.0	N/A
17 간장	28	15	39	7	20	0.0	185.7	-8.1
18 고추류(파쇄)	3	1	9	17	14	0.0	-17.6	47.0
19 혼합조미료	0	7	3	2	14	0.0	600.0	N/A
20 국수 기타	0	1	0	0	13	0.0	N/A	N/A

*주: HSCODE(2101.11-1000, 2101.12-9010, 2008.99-5010, 1902.30-1010, 1901.90-9099, 2103.90-9090, 1905.90-1090, 1901.90-9091, 1901.20-9000, 0801.22-0000, 1104.19-9000, 2103.90-1030, 2005.99-1000, 1212.21-1010, 1518.00-9090, 2106.90-9099, 2103.10-0000, 0904.22-0000, 2103.90-9030, 1902.19-1000)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3.12.18)

□ 對이스라엘 수출품목 대부분에 FTA 관세 혜택 발생

- 이스라엘은 한-이스라엘 FTA 양허유형을 크게 16가지로 분류

<표 II-21> 한-이스라엘 FTA 관세 양허 유형(이스라엘측)

양허유형	내용	양허유형	내용
0	협정 발효일로부터 무관세 적용, 즉시철폐	15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3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6	협정 발효일로부터 16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5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9	협정 발효일로부터 19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6	협정 발효일로부터 6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MFN-15%	협정 발효일로부터 15% 인하, MFN의 85% 적용
7	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MFN-25%	협정 발효일로부터 25% 인하, MFN의 75% 적용
8	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MFN-50%	협정 발효일로부터 50% 인하, MFN의 50% 적용
10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X	MFN(기준관세율) 적용
12	협정 발효일로부터 12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Y	협정상 관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출처: 한-이스라엘 FTA 실무활용 가이드, KOTRA(2022.12.)

- 또한, 이스라엘은 단독세율(농산물 395개 품목) 및 복합세율(농산물 255개 품목)을 혼합하여 민감성을 보호하고 있음

〈표 II-22〉 한-이스라엘 FTA 농산물 세율 유형(이스라엘측)

구분		품목 수(개)
전체 농산물		1,159
단독	소계	395
	종가세	379
	종량세	16
복합	소계	255
	종가 + no less than	57
	종량 + no more than	173
	종가 + 종량	25
무관세		509

*출처: 한·이스라엘 FTA 상세설명자료(2021.05.)

- **(즉시 철폐)** 커피 농축물(HS 21011100),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HS 21011200), 라면(HS 19023000), 등 대부분의 품목은 한-이스라엘 FTA에 따라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5년 철폐)** 조미김(HS 20089990), 브라질넛(HS 08012200) 등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매년 관세를 균등 철폐
 - 조미김과 브라질넛은 종가세 적용 대상으로, 각각 기준세율 8%, 4%에서 균등 철폐됨
- **(7년 철폐)** 수출상위 품목 중 베이커리 제품(HS 19059091)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간 매년 관세를 균등 철폐
 - 베이커리 제품은 복합세율 적용 대상으로, 0.32NIS(한화 약 116원)와 112%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됨
- 이 밖에도 동식물성 유지 기타(HS 15180015), 고추류(파쇄)(HS 09042200) 등은 MFN(기준관세율)이 적용됨

〈표 II -23〉 對이스라엘 수출품목별 FTA 양허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No less Than(NIS)	측정단위	쿼터		
1	커피 농축물 (HS 21011100)	0	0	0	0	kg	없음	0
2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 (HS 21011200)	0	0	0	0	kg	없음	0
3	조미김 (HS 20089990)	8	0	0	0	kg	없음	5
4	라면 (HS 19023000)	0	0	0	0	kg	없음	0
5	조제식료품 (HS 19019090)	0	0	0	0	kg	없음	0
6	소스 조제품 (HS 21039090)	4	0	0	0	kg	없음	0
7	베이커리제품 (HS 19059091)	0	0.32	112	0	kg	없음	7
8	쌀가루 조제식료품 (HS 19019090)	0	0	0	0	kg	없음	0
9	베이커리 혼합물 (HS 19012090)	0	0	0	0	kg	없음	0
10	브라질넛 (HS 08012200)	4	0	0	0	kg	없음	5
11	곡물 기타 (HS 11041990)	0	0	0	0	kg	없음	0
12	고추장 (HS 21039090)	4	0	0	0	kg	없음	0
13	김치 (HS 20059990)	12	0	0	0	kg	없음	0
14	건조김 (HS 12122100)	0	0	0	0	kg	없음	0
15	동식물성 유지 기타(HS 15180015)	6	0	0	0	kg	없음	X
16	조제품 기타 (HS 21069099)	4	0	0	0	kg	없음	0
17	간장 (HS 21031000)	4	0	0	0	kg	없음	0
18	고추류(파쇄) (HS 09042200)	12	0	0	0	kg	없음	X
19	혼합조미료 (HS 21039090)	4	0	0	0	kg	없음	0
20	국수 기타 (HS 19021900)	0	0	0	0	kg	없음	0

*주1: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한국산 수출 HSK Code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제 상대국 수입 HS Code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출처: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

라. 원산지규정

- 한-이스라엘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원산지 상품) 한-이스라엘 FTA 협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가.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함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 (원산지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은 특혜 관세 대우를 위해 다음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

〈표 II-24〉 對이스라엘 수출품목별 FTA 원산지 규정

품목명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커피 농축물	(제21류) 21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	(제21류) 21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조미김	(제20류) 20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라면	(제19류) 19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조제식료품	(제19류) 19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소스 조제품	(제21류) 21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베이커리제품	(제19류) 19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쌀가루 조제식료품	(제19류) 19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베이커리 혼합물	(제19류) 19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품목명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커피 농축물	(제21류) 21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	(제21류) 21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조미김	(제20류) 20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라면	(제19류) 19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조제식료품	(제19류) 19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소스 조제품	(제21류) 21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베이커리제품	(제19류) 19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쌀가루 조제식료품	(제19류) 19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베이커리 혼합물	(제19류) 19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브라질넛	(제8류) 0801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곡물 기타	(제11류) 11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고추장	(제21류) 21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김치	(제20류) 20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건조김	(제12류) 1212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동식물성 유지 기타	(제15류) 151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조제품 기타	(제21류) 21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간장	(제21류) 21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고추류(파쇄)	(제9류) 09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혼합조미료	(제21류) 21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국수 기타	(제19류) 19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출처: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선택 가능

- (기관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서류 및 전자적 형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자율발급)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원산지 증명 가능

3. 한-캄보디아 FTA

가. 협정개요

- 2021년 2월 3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22년 12월 1일부터 발효
 - 한-캄보디아 FTA는 아세안 국가와 세 번째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FTA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로서 역할
 - 캄보디아와는 한-캄보디아 FTA 외에도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상품협정 발효), RCEP(2022년 2월 국내 발효)을 체결한 상황
- 캄보디아는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품목 수 기준 93.8%,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5.6%의 관세 철폐⁴⁾
 - 특히, 2022년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발효 초기부터 FTA 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됨⁵⁾

4) 한-아세안 FTA, RCEP 반영 시

5) 산업통상자원부(2022.11.30).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보도자료

〈표 II-25〉 한-캄보디아 FTA 최종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캄보디아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전체	12,234	100.0	10,813	100.0
한-아세안 FTA	11,127	91.0	8,295	76.7
RCEP 추가철폐	427	3.5	1,760	16.3
한-아세안 FTA + RCEP	11,554	94.4	10,055	93.0
한-캄보디아 FTA	140	1.2	84	0.8
즉시철폐	64	0.5	27	0.2
5년 철폐	36	0.3	4	0.0
7년 철폐	1	0.0	-	-
10년 철폐	20	0.2	21	0.2
15년 철폐	19	0.2	18	0.2
20년 철폐	-	-	14	0.1
총계 ¹⁾	11,694	95.6	10,139	93.8

1) 한-아세안 FTA + RCEP + 한-캄보디아 FTA

*출처: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 협정에 따라 20년간 관세 철폐 또는 인하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양국간 협상 실시
 -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Reciprocal Arrangement)⁶⁾ 품목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 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
 - 한국은 상호주의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캄보디아는 482개 품목을 상호주의 품목으로 지정
 - 이 중 농산물은 총 305개 품목에 적용되며, 딸기·포도·사과·배 등 과실류와 주류, 농산가공품 등이 해당함

6)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양허했다더라도 관세 혜택에서 배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에 따라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만 적용

나. 농산물 양허 · 개방현황

- 한-캄보디아 및 한-아세안 FTA를 통해 캄보디아는 총 1,21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기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서는 전체 1,343개 농산물 중 859개(64.0%)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356개(26.5%) 품목이 추가로 관세가 철폐됨

〈표 II-26〉 한-캄보디아 FTA 농산물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캄보디아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전체 농산물	1,623	100.0	1,343	100.0
한-아세안 FTA	1,090	67.2	859	64.0
한-캄보디아 FTA	533	32.8	484	63.0
철폐 소계	185	11.4	356	26.5
즉시 철폐	1	0.1	55	4.1
5년 철폐	39	2.4	12	0.9
7년 철폐	28	1.7	-	-
10년 철폐	45	2.8	19	1.4
15년 철폐	72	4.4	263	19.6
20년 철폐	-	-	7	0.5
관세 감축	-	-	14	1.0
양허 제외	348	21.4	114	8.5

*주: (한국) HS 2019, (캄보디아) AHTN 2017 기준

*출처: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재가공

-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15년 이내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 인하 혜택이 발생함
 - (즉시 철폐) 55개 품목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기타 육류가공품, 대추, 딸기, 땅콩, 배, 사과 등이 포함됨
 - (5년 이내 철폐) 총 67개 품목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철폐되며, 즉시 철폐 품목 외에도 고추, 양파, 오리고기, 비스킷 등이 포함됨

- (10년 이내 철폐) 총 86개 품목이 10년 이내에 철폐되며, 즉시 및 5년 이내 철폐 품목 외에도 간장, 기타과실(냉동), 닭고기, 된장, 멜론 등 포함됨
- (20년 이내 철폐) 총 356개 품목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간 관세가 철폐됨
 - 15년 철폐 품목에는 면류(기타), 기타 농산가공품, 기타곡분, 인삼, 홍차 등 263개 품목이 포함되며, 20년 철폐 품목에는 기타채소, 우유, 호박 등 7개 품목이 포함됨
- (관세 감축) 고추, 식물성한약재 등 14개 품목은 협정 발효 후 10년간 기준세율을 유지하고 이후 10년간 기준세율의 50% 균등감축 예정
- (양허 제외) 화초류, 낙농품, 주류 등 114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

〈표 II-27〉 한-캄보디아 FT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캄보디아측)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 품목
즉시 철폐	55	기타육류가공품, 대추, 딸기, 땅콩, 말, 배, 사과, 소시지, 쇠고기, 오리고기 등
5년 철폐	12	고추, 기타식물성물질, 기타식물성유지, 비스킷, 양파, 오리고기 등
5년 이내 철폐	67	
10년 철폐	19	간장, 기타과실(냉동), 기타두류, 기타식물성재료, 닭고기, 된장, 멜론, 물, 소주, 포도 등
10년 이내 철폐	86	
15년 철폐	263	면류(기타),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곡분, 인삼, 홍차, 기타주류, 쇠고기, 곡류가공품, 과일주스, 참기름, 옥수수가루, 쌀가루, 복숭아, 완두, 돼지고기, 양송이, 감자, 자두, 양배추, 기타당류, 비스킷, 오리고기, 잣, 대두, 녹두, 대두유, 우유, 두리안, 파파야, 식물성 한약재, 들기름, 들깨, 인삼주, 땅콩, 기타낙농품, 타피오카, 당근, 강낭콩, 발효유, 녹용, 밤, 버찌, 옥수수, 버터, 고구마, 보리가루, 꿀, 닭고기, 분유 등
20년 철폐	7	기타채소, 우유, 호박 등
20년 이내 철폐	356	
관세 감축	14	고추, 식물성한약재, 돼지고기, 기타식물성재료, 참깨, 기타육류가공품 등
총계	370	

*출처: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다.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개방현황

□ 2022년 對캄보디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억 1,336만 달러 (한화 약 1,475억 원)로, 전년 대비 7.3% 증가

- 기타 음료(63.8%), 조제분유(8.0%), 라면(5.9%),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3.0%), 조제식료품 기타(2.2%) 등이 주로 수출됨

〈표 II-28〉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90,085	102,526	96,736	105,607	113,362	100.0	7.3	5.9
1 기타 음료	68,364	82,174	72,087	70,753	72,272	63.8	2.1	1.4
2 조제분유	6,143	2,724	4,049	6,347	9,039	8.0	42.4	10.1
3 라면	2,677	2,477	6,123	5,985	6,666	5.9	11.4	25.6
4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	0	515	777	2,380	3,453	3.0	45.1	N/A
5 조제식료품 기타	1,354	3,907	1,541	2,928	2,500	2.2	-14.6	16.6
6 기타 무알콜 음료	1,788	1,249	1,090	1,723	1,567	1.4	-9.1	-3.2
7 소주	1,169	419	644	1,300	1,156	1.0	-11.1	-0.3
8 홍삼조제품	71	362	93	120	1,036	0.9	763.3	95.4
9 소스 조제품 기타	726	609	773	859	788	0.7	-8.3	2.1
10 조미김	N/A	45	302	393	729	0.6	85.5	N/A
11 마요네즈	2	1	21	20	716	0.6	3480.0	335.0
12 채소류 조제품	137	359	700	1,013	705	0.6	-30.4	50.6
13 고추장	110	182	442	1,102	498	0.4	-54.8	45.9
14 베이커리제품	457	317	406	580	485	0.4	-16.4	1.5
15 아이스크림	109	191	218	239	369	0.3	54.4	35.6
16 신선 딸기	146	415	320	249	350	0.3	40.6	24.4
17 신선 포도	8	31	52	76	337	0.3	343.4	154.8
18 속을 채운 파스타	183	168	206	302	285	0.3	-5.6	11.7
19 인스턴트커피	90	208	430	383	273	0.2	-28.7	32.0
20 홍삼엑스	0	45	31	23	260	0.2	1,030.4	614.1

*주: HS CODE 2202.10-9000, 1901.10-1010, 1902.30-1010, 2208.70-9000, 2106.90-9099, 2202.99-9000, 2208.90-4000, 2106.90-3029, 2103.90-9090, 2008.99-5010, 2103.90-9010, 2005.99-9000, 2103.90-1030, 1905.90-1090, 2105.00-1090, 0810.10-0000, 0806.10-0000, 1902.20-0000, 2101.12-1000, 1302.19-1210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3.12.18)

□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은 즉시 또는 15년 내 관세 철폐

-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및 한-아세안 FTA, RCEP의 양허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

<표 II -29> 한-캄보디아 FTA 및 한-아세안 FTA 양허유형(캄보디아 측)

구분	양허유형	내용
한- 캄보디아 FTA	0	· 협정 발효일로부터 무관세 적용, 즉시철폐
	5	·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7	· 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0	·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5	·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20	·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EX	·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 유지
	HSL	· 관세 이행 10년차까지 기준세율을 유지하고, 11년차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세율을 인하해 이행 20년차부터 기준세율의 50% 적용
한-아세안 FTA	NT (Normal Track)	· 일반품목: 2020년 1월 1일 기준 무관세
	SL ¹⁾ (Sensitive List)	· 민감품목: 2020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 2024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
	HSL ²⁾ (Highly Sensitive List)	· 초민감품목 * A그룹: 2024년까지 50% 관세율 상한 적용 * B그룹: 2024년까지 20%만큼 관세율 인하 * C그룹: 2024년까지 50%만큼 관세율 인하 * D그룹: 2024년까지 최소 수입물량 적용 * E그룹: 2024년까지 양허 제외
RCEP	U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외

1) 상한선: 모든 관세품목의 10%

2) 상한선: HS 6단위 200개 또는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주: 캄보디아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후발 아세안 가입국으로, 6개국에 비해 관세철폐 스케줄 적용이 늦음

*출처: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1, 부속서 2,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2007.04.), RCEP 협정문 부속서 1

- **(즉시 철폐)** 한-캄보디아 FTA에 따라 기타 음료(캄보디아 HS 22021090), 조제분유(HS 19011020), 조제식료품 기타(HS 21069099), 기타 무알콜 음료(HS 22029990) 등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됨
- **(10년 철폐)** 소스 조제품 기타(HS 21039019), 마요네즈(HS 21039013), 고추장(HS 21039019) 등 소스류의 관세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간 매년 균등 철폐됨
- **(15년 철폐)**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HS 22087090), 조미김(HS 20089990) 등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간 관세가 매년 균등 철폐됨
- **(기준세율 유지)** 수출상위 품목 중 라면(HS 19023040), 소주(HS 22089070), 베이커리제품(HS 19059090)은 기준세율이 유지됨
 - 라면, 소주, 베이커리제품은 한-아세안 FTA 상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에 해당

〈표 II -30〉 對캄보디아 수출품목별 FTA 양허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기준세율 ¹⁾	한-캄보디아 FTA (양허유형)	한-아세안 FTA (양허유형)	RCEP	
				양허유형	'23년세율 ²⁾
1 기타 음료 (HS 22021090)	0	0	NT	U	양허 제외
2 조제분유 (HS 19011020)	0	0	NT	U	양허 제외
3 라면 (HS 19023040)	15	EX	SL	U	양허 제외
4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 (HS 22087090)	0	15	NT	N/A	N/A
5 조제식료품 기타 (HS 21069099)	0	0	NT	U	양허 제외
6 기타 무알콜 음료 (HS 22029990)	0	0	NT	N/A	N/A
7 소주 (HS 22089070)	15	EX	HSL B	20년 철폐	13.5
8 홍삼조제품 (HS 21069071)	0	0	NT	N/A	N/A
9 소스 조제품 기타 (HS 21039019)	15	10	SL	N/A	N/A
10 조미감 (HS 20089990)	0	15	NT	기준세율 유지	35
11 마요네즈 (HS 21039013)	15	10	SL	N/A	N/A
12 채소류 조제품 (HS 20059990)	0	0	NT	기준세율 유지	35
13 고추장 (HS 21039019)	15	10	SL	N/A	N/A
14 베이커리제품 (HS 19059090)	7	EX	SL	U	양허 제외
15 아이스크림 (HS 21050000)	0	0	NT	15년 철폐	32
16 신선 딸기 (HS 08101000)	0	0	NT	기준세율 유지	7
17 신선 포도 (HS 08061000)	0	10	NT	기준세율 유지	7
18 속을 채운 파스타 (HS 19022090)	0	0	NT	15년 철폐	13
19 인스턴트커피 (HS 21011110)	0	0	NT	U	양허 제외
20 홍삼엑스 (HS 13021990)	0	0	NT	즉시 철폐	0

1) 한-캄보디아 FTA 기준세율(2019년 1월 1일에 유효한 캄보디아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과 한-아세안 FTA 상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가장 낮은 것)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차 세율 적용

*주1: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한국산 수출 HSK Code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제 상대국 수입 HS Code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RCEP 양허표는 협정 부속서에 따라 HS 2012에 기초하며, 첫 번째 관세 인하 이행 연도는 협정 발효일(2022.01.01.)로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함

*출처: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한-아세안 FTA 관세 양허표, RCEP 협정문 부속서1 관세 양허표

라. 원산지규정

- 한-캄보디아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원산지 상품) 한-캄보디아 FTA 협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가. 제3.3조의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중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상품

- (원산지 누적)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인 완성 상품의 재료로써 사용될 경우, 최종 상품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은 특혜 관세 대우를 위해 다음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

〈표 II -31〉 對캄보디아 수출품목별 FTA 원산지 규정

품목명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기타 음료	2202.1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조제분유	1901.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라면	1902.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	22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단, 1211.20호, 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함)
조제식료품 기타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단, 1211.20호, 1212.21호, 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함)
기타 무알콜 음료	220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단, 1211.20호, 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함)
소주	22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홍삼조제품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단, 1211.20호, 1212.21호, 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함)

품목명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소스 조제품 기타	21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조미김	2008.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마요네즈	21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채소류 조제품	2005.99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이상일 것
고추장	21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베이커리제품	19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아이스크림	21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신선 딸기	0810.10	완전생산기준
신선 포도	0806.10	완전생산기준
속을 채운 파스타	1902.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인스턴트커피	2101.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홍삼엑스	1302.19	완전생산기준

*출처: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선택 가능

- (기관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서류 및 전자적 형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자율발급)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음

4. 한-인도네시아 CEPA

가. 협정개요

- 2019년 11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⁷⁾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
 - 한-인도네시아 CEPA는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네 번째로 체결하는 협정임
 - 인도네시아와는 한-인도네시아 FTA 외에도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상품협정 발효), RCEP(2022년 2월 국내 발효)을 체결

- 인도네시아는 전체 상품에 대해 품목 수 기준 94.8%, 우리나라는 95.8%에 대해 관세 철폐⁸⁾
 - 기체결한 한-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의 시장 개발 수준을 약 13% 확대한 것으로 평가

7)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당사국간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2.11.30.).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보도자료)

8) 한-아세안 FTA, RCEP 반영 시

<표 II-32> 한-인도네시아 최종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전체	12,232	100.0	10,813	100.0
한-아세안 FTA	11,032	90.2	8,661	80.1
RCEP	493	4.0	1,229	11.4
한-아세안 FTA + RCEP ¹⁾	11,525	94.2	9,890	91.5
한-인도네시아 CEPA	191	1.6	361	3.3
즉시철폐	58	0.5	116	1.1
면세제도	-	-	104	1.0
3년 철폐	73	0.6	-	-
5년 철폐	18	0.1	28	0.3
7년 철폐	8	0.1	50	0.5
10년 철폐	24	0.2	116	1.1
15년 철폐	6	0.0	43	0.4
20년 철폐	4	0.0	8	0.1
총계 ²⁾	11,716	95.8	10,251	94.8

1) RCEP 협상기준(품목수 HS 2014)

2) 한-아세안 FTA + RCEP + 한-인도네시아 CEPA

*주: HS 2017 기준

*출처: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점진적으로 인하

- 양국은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협상을 실시
 - ▲관세 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Reciprocal Arrangement) 품목 ▲관세 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
- 협상 결과, 인도네시아는 품목 수 기준 93.0%의 추가 자유화율을 달성함
 - 우리나라 측 협상대상은 1,200개, 인도네시아측 협상대상은 2,152개로, 상호주의 품목은 한국 98개, 인도네시아 793개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98개 품목,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 793개 품목을 상호주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

나. 농산물 양허·개방현황

- 한-아세안 및 한-인도네시아 FTA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총 1,158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1,343개 농산물 중 803개(59.8%) 품목에 대해 관세 양허
 -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서는 355개(26.4%)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철폐함

〈표 II-33〉 한-인도네시아 CEPA 농산물 양허 수준

구분	한국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전체 농산물	1,623	100.0	1,343	100.0
한-아세안 FTA	1,086	66.9	803	59.8
한-인도네시아 CEPA	537	33.1	540	40.2
철폐 소계	144	8.9	355	26.4
즉시 철폐	6	0.4	276	20.6
3년 철폐	10	0.6	1	0.1
5년 철폐	45	2.8	2	0.1
7년 철폐	1	0.1	15	1.1
10년 철폐	46	2.8	37	2.8
15년 철폐	20	1.2	19	1.4
20년 철폐	16	1.0	5	0.4
관세 감축	2	0.1	-	-
기준세율 유지	36	2.2	-	-
양허 제외	355	21.9	185	13.8

*주: (한국) HS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기준

*출처: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재가공

- 한-인도네시아 CEPA 철폐 품목인 355건 모두 20년 이내 철폐됨
 - (즉시 철폐) 276개 품목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기타 식물성유지, 견과류, 음료베이스, 과일주스 등이 해당됨
 - (5년 이내 철폐) 총 279개 품목이 즉시 또는 3년, 5년 이내에 철폐됨
 - 딸기는 3년 간 균등 철폐 대상(1개)이며, 소스류(기타), 곡류가공품은 5년 철폐 대상(2개)에 해당

- (10년 이내 철폐) 총 331개 품목이 10년 이내에 철폐됨
 - 7년 철폐 품목(15개)에는 간장, 면류(기타), 곡분 등이 포함되며, 10년 철폐 품목(37개)에는 땅콩, 기타곡분, 사료, 생강 등이 포함됨
- (20년 이내 철폐) 총 355개 품목 모두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됨
 - 생강, 고추, 녹차, 마늘 등은 15년간(19개), 오렌지, 고추, 망고 등은 20년간 (5개) 관세가 철폐됨
- (관세 감축) 인도네시아측의 관세 감축 대상은 없음
- (기준세율 유지) 인도네시아측의 기준세율 유지 대상은 없음
- (양허 제외) 쌀, 곡류가공품, 당류, 주류 등 185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

〈표 II -34〉 한-인도네시아 CEP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인도네시아측)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76	기타식물성유지, 견과류, 음료베이스, 과일주스, 땅콩, 밤, 기타 채소, 감자, 빵, 면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초콜릿, 꿀, 들기름, 참기름, 들깨, 참깨, 곡분(기타곡분, 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등), 감, 사과, 버찌, 밤, 딸기, 배, 포도, 바나나, 고구마, 타피오카, 난류, 치즈, 버터, 기타낙농품, 발효유, 우유 등
3년 철폐	1	딸기
5년 철폐	2	소스류(기타), 곡류가공품
5년 이내 철폐	279	
7년 철폐	15	간장, 면류(기타), 곡분, 레몬, 라임, 오렌지(건조), 구아바, 파인애플 등
10년 철폐	37	땅콩, 기타곡분, 사료, 생강, 고추, 녹차, 기타과실, 타피오카, 강낭콩, 팥, 버섯, 양파, 양배추, 우유,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10년 이내 철폐	331	
15년 철폐	19	생강, 고추, 녹차, 마늘, 천연꿀, 우유, 쇠고기
20년 철폐	5	오렌지, 고추, 망고, 소, 곡분 등
20년 이내 철폐	355	
관세 감축	-	-
기준세율 유지	-	-
총계	355	

*출처: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다.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개방현황

□ 2022년 對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3억 1,831만 달러(한화 약 4,144억 원)로, 전년 대비 11.5% 증가

- 커피크리머(16.3%), 기타 무알콜 음료(4.6%), 라면(4.4%), 건조김(3.6%), 조제식료품 기타(3.4%) 등이 주로 수출됨

〈표 II -35〉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227,184	197,674	209,861	285,376	318,314	100.0	11.5	8.8
1 커피크리머	41,264	36,833	33,692	49,231	51,751	16.3	5.1	5.8
2 기타 무알콜 음료	19,337	8,163	7,914	13,816	14,590	4.6	5.6	-6.8
3 라면	18,157	21,894	11,998	11,646	14,132	4.4	21.3	-6.1
4 건조김	2,134	1,833	4,701	5,000	11,381	3.6	127.7	52.0
5 조제식료품 기타	8,429	5,960	9,248	14,270	10,708	3.4	-25.0	6.2
6 조미김	N/A	490	3,289	4,348	6,247	2.0	43.7	N/A
7 쌀가루 조제식료품	886	785	3,522	5,454	4,024	1.3	-26.2	46.0
8 색이 첨가된 음료	2,379	603	2,393	3,676	3,099	1.0	-15.7	6.8
9 신선 딸기	822	824	1,286	2,349	2,642	0.8	12.5	33.9
10 스위트 비스킷	130	122	746	1,747	2,093	0.7	19.8	100.4
11 옥수수 전분	1,189	1,287	1,032	1,268	1,745	1.5	37.6	10.1
12 소스 조제품	771	788	1,394	1,385	1,585	1.4	14.4	19.7
13 소주	1,323	1,260	1,363	1,400	1,559	1.4	11.4	4.2
14 밀가루	1,890	2,063	1,854	1,704	1,490	1.3	-12.6	-5.8
15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	21	938	563	1,226	1,288	1.1	5.1	179.8
16 베이커리용 혼합물	97	134	57	92	1,203	1.1	1207.6	87.7
17 신선 배	662	715	534	1,085	1,184	1.0	9.1	15.6
18 베이커리제품	720	546	695	942	966	0.9	2.5	7.6
19 동물성 유지 기타	N/A	0	138	452	816	0.7	80.5	N/A
20 고추장	456	546	840	1,246	799	0.7	-35.9	15.1

*주: HSK CODE 2106.90-9010, 2202.99-9000, 1902.30-1010, 1212.21-1010, 2106.90-9099, 2008.99-5010, 1901.90-9091, 2202.10-1000, 0810.10-0000, 1905.31-0000, 1108.12-1000, 2103.90-9090, 2208.90-4000, 1101.00-1000, 2208.70-9000, 1901.20-9000, 0808.30-0000, 1905.90-1090, 1506.00-9000, 2103.90-1030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3.12.18.)

□ 對인도네시아 수출상위 품목 대부분 3년 이내 관세가 철폐됨

-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아세안 FTA, RCEP 상 양허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

〈표 II-36〉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아세안 FTA 양허유형(인도네시아 측)

구분	양허유형	내용
한-인도네시아 CEPA	E0	· 협정 발효일로부터 무관세 적용, 즉시철폐
	E3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E5	·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E7	· 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E10	·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E15	·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E20	·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SS	· 기준관세율을 유지
	EX	· 관세 인하 및 철폐 대상 품목이 아님
한-아세안 FTA	NT (Normal Track)	· 일반 품목군: 2010년까지 관세 철폐(관세품목 5%는 2012년까지)
	SL ¹⁾ (Sensitive List)	· 일반민감품목: 2016년까지 0~5%로 인하
	HSL ²⁾ (Highly Sensitive List)	· 초민감품목 * A그룹: 2016년까지 50% 관세율 상한 적용 * B그룹: 2016년까지 20%만큼 관세율 인하 * C그룹: 2016년까지 50%만큼 관세율 인하 * D그룹: 2016년까지 최소 수입물량 적용 * E그룹: 2016년까지 양허 제외
RCEP	RCEP	U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외

1) 상한선: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수입액 0%

2) 상한선: Hs 6단위 200개 또는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그리고 총 수입액 3%

*출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부속서 2-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1, 부속서 2, 한-아세안 FTA 주요 내용(외교통상부, 2007.04.), RCEP 협정문 부속서 1,

- (즉시 철폐)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라 커피크리머(인도네시아 HS 21069099), 기타 무알콜 음료(HS 22029990), 라면(HS 19023090)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
- (3년 철폐) 수출상위 품목 중 신선 딸기(HS 08101000)의 관세는 CEPA에 따라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 이 밖에도 옥수수 전분(HS 11081200), 소스 조제품(HS 21039019), 소주(HS 22089070) 등은 CEPA 양허 대상에서 제외

〈표 II -37〉 對인도네시아 수출품목별 CEPA 양허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기준세율 ¹⁾	한-인니 CEPA 양허유형	한-아세안 FTA 양허유형	RCEP	
				양허유형	'23년세율 ²⁾
1 커피크리머 (HS 21069099)	0	E0	NT	10년	3.5 (HS 2106909990)
2 기타 무알콜 음료 (HS 22029990)	0	E0	NT	N/A	N/A
3 라면 (HS 19023090)	0	E0	NT	10년	8 (HS 1902309000)
4 건조김 (HS 12122119)	5	E0	NT	N/A	N/A
5 조제식료품 기타 (HS 21069099)	0	E0	NT	10년	3.5 (HS 2106909990)
6 조미김 (HS 20089930)	5	E0	NT	즉시 철폐	0 (HS 2008993000)
7 쌀가루 조제식료품 (HS 19019099)	5	E0	NT	즉시 철폐	0 (HS 1901909990)
8 색이 첨가된 음료 (HS 22021090)	0	E0	NT	10년	3.5 (HS 22021109000)
9 신선 딸기 (HS 08101000)	5	E3	NT	10년	3.5 (HS 0810100000)
10 스위트 비스킷 (HS 19053110)	0	E0	NT	10년	8 (HS 1905311000)
11 옥수수 전분 (HS 11081200)	10	EX	NT	현행 세율 유지	10 (HS 1108120000)
12 소스 조제품 (HS 21039019)	5	EX	NT	N/A	N/A
13 소주 (HS 22089070)	150	EX	HSL E	U	양허 제외
14 밀가루 (HS 11010011)	0	E0	NT	N/A	N/A
15 기타 리큐르 및 코디알(HS 22087090)	150	EX	HSL E	N/A	N/A
16 베이커리용 혼합물 (HS 19012010)	10	EX	NT	10년	8 (HS 1901201000)
17 신선 배 (HS 08083000)	5	E0	NT	즉시 철폐	0 (HS 0808300000)
18 베이커리제품 (HS 19059090)	0	E0	NT	15년	7.9 (HS 1905909000)
19 동물성 유지 기타 (HS 15060000)	0	E0	NT	즉시 철폐	0 (HS 1506000000)
20 고추장 (HS 21039019)	5	EX	NT	N/A	N/A

1) 한-인도네시아 CEPA 기준세율

2) 2012년도 인도네시아 국가품목분류 기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차 세율 적용

*주1: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한국산 수출 HSK Code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제 상대국 수입 HS Code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RCEP 양허표는 협정 부속서에 따라 일본 국가품목분류표에 기초하며, 첫 번째 관세 인하 이행 연도는 협정 발효일(2022.01.01.)로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함

*출처: 한-인도네시아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한-아세안 FTA 관세 양허표, RCEP 협정문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라. 원산지규정

□ 한-인도네시아 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원산지 상품)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나)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라.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낚사냥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2에 따라 그러한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마)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원산지 누적)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인 완성된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특혜 관세 대우를 위해 다음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

〈표 II-38〉 對인도네시아 수출품목별 FTA 원산지 규정

품목명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커피크리머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1211.20호, 1212.21호, 1302.19호는 제외함)
기타 무알콜 음료	220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1211.20호, 1212.21호, 1302.19호는 제외함)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라면	1902.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건조감	1212.21	완전생산기준
조제식료품 기타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1211.20호, 1212.21호, 1302.19호는 제외함)
조미감	2008.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쌀가루 조제식료품	1901.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색이 첨가된 음료	2202.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신선 딸기	0810.10	완전생산기준
스위트 비스킷	1905.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옥수수 전분	1108.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스 조제품	21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소주	22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밀가루	1101.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리큐르 및 코디얼	22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베이커리용 혼합물	1901.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신선 배	0808.30	완전생산기준
베이커리제품	19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동물성 유지 기타	15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고추장	21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출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FTA 원산지증명서는 2023년 12월 기준 기관을 통해 발급
해야 하나, 이후 순차적으로 자율발급을 도입할 예정

- (기관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서류 및 전자적 형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자율발급)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발효 2년 이내(또는 양국 합의일)에 도입할 예정이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10년 내 이행할 계획임

Ⅲ. 시사점

1. FTA 활용 및 수출 증대 방안

□ RCEP 및 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와의 신규 발효 FTA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의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

- 신규 FTA 발효로 인해 단기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RCEP 참여국 및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는 기존에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로, 신규 FTA의 발효로 인한 추가 관세 철폐 규모가 크지 않음
 - 새롭게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도 민감품목 대부분이 배제되어 타 FTA 대비 양허 수준이 낮음
 - 마찬가지로, 對이스라엘 농식품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4,206만 달러(한화 약 547억 원)로 수출상대국 순위 20위권 밖에 위치하여 아직까지 수출규모가 크지 않은 편
- 하지만, 기체결 FTA의 보완과 네트워크 형성, 신시장 개척 측면에서 장기적 성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2022년 발효된 RCEP은 한국산 농식품 수출 비중이 큰 15개국과 체결한 세계 최대 FTA로, 협정을 통해 참여국과 높은 결속력을 다지게 됨
 - 또한, RCEP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협정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로 취급함으로써 원재료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배, 딸기), 필리핀(배, 딸기, 기타당), 태국(감, 딸기) 등 아세안 일부 국가의 상호주의가 RCEP 체결에 따라 폐지됨⁹⁾
 -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 및 RCEP 체결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는 양자간 FTA를 체결하게 되어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이스라엘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FTA를 체결하여 한국산 농식품 수출 기회가 마련됨

9)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08.)

□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FTA 활용 및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12월 기준, 필리핀, UAE, 에콰도르와의 FTA가 서명 또는 타결된 상황
- 2022년 6월 필리핀과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2023년 9월 정식 서명함
 - 필리핀과는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 이어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 중 96.5%에 대해 관세를 철폐
- 2023년 10월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 UAE측은 전체 상품에 대해 품목 수 기준 91.2% 개방
- 2023년 10월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에콰도르측은 92.8%의 관세 철폐

□ FTA 특혜세율을 활용하여 관세 인하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관세혜택 및 원산지 기준에 유의

- 기체결한 FTA 및 신규 발효 FTA 간 우선순위 확인 필요
- 협정간 세율을 비교하여 보다 낮은 세율의 협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상대국 세율을 통해 FTA 관세혜택을 확인해야 함
 - ※ FTA 관세혜택 = (상대국 MFN 세율 - FTA 세율) × 수출금액
- 또는 협정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 규정 충족에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¹⁰⁾

- ①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 BOM¹¹⁾, Part List¹²⁾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 확인: 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하며,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 필요
 -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 협정별 규정된 서식 및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올바르게 발급하고 보관 및 증빙 요구사항을 충족

10)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11)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12)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FTA 강국, KOREA(www.fta.go.kr)
2	KATI 농식품 수출정보
3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4	RCEP 협정문
5	RCEP 상세 설명자료(2021.10.)
6	한-중 FTA 협정문
7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06.)
8	한-베트남 FTA 협정문
9	한-아세안 FTA 협정문
10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
11	한·이스라엘 FTA 상세설명자료(2021.05.)
12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13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14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15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16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외교통상부, 2007.04.)
17	농식품 수출을 위한 RCEP 협정 활용 매뉴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05.)
18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05.)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2022.12.16.)
20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KOTRA(2019.11.)
21	한-이스라엘 FTA 실무활용 가이드, KOTRA(2022.12.)
22	산업통상자원부(2022.11.30.).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보도자료
23	산업통상자원부(2023.09.07.).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보도자료
24	산업통상자원부(2023.10.11.).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보도자료
25	산업통상자원부(2023.10.14.).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보도자료